|  |  |  |
| --- | --- | --- |
| **공중장소 위생관리조례 실시세칙**  위생보건부 령 제80호  《공중장소 위생관리조례 실시세칙》을 2011년 2월 14일 위생보건부 사무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陳竺  2011년 3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공중장소 위생관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자기의 경영활동에서 위생관련 법률과 행정법규, 부문의 규정 및 관련 위생기준과 규범을 준수하고 공중장소 위생지식을 선전하며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공중의 건강을 보장하고 고객에게 양호한 위생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위생보건부에서 전국 공중장소 위생에 대한 감독관리활동을 관장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자기 행정구역의 공중장소 위생에 대한 감독관리활동을 책임진다.  국경 출입항 및 출입국 교통수단의 위행에 대한 감독관리활동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서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철도부문 소속 위생보건 주관부서에서는 관할법위 내의 역전, 대기실, 철도의 객차 및 본 부문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장소의 위생에 대한 감독관리활동을 책임진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위생보건행정부서에서는 공중장소 위생에 대한 감독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공중장소 위생 감독조직과 위생검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히 하며 공중장소 위생 감독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5조** 공중장소 업계조직에서 업계 자율교육을 전개하며 공중장소의 경영자들을 인도하여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업계의 성실신의구축을 추동하며 공중장소 위생지식의 선전 보급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제6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이 세칙위반에 대해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발을 접수한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즉시 조사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회답을 주어야 한다.  **제2장 위생 관리**  **제7조** 공중장소의 법정 대표자나 책임자는 그 경영 장소의 위생안전 제1책임자이다.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위생관리부문을 설립하거나 전담(겸직) 위생관리원을 배치하여 공중장소의 위생활동을 책임지고 위생관리제도와 위생관리서류 보관제도를 건전히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공중장소 위생관리 보관서류에는 주로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위생관리부문, 담당직원의 상황 및 위생관리제도  (2) 공기, 미소기후(온도, 습도, 풍속), 수질, 채광, 조명, 소음의 검측상황  (3) 고객이 이용하는 기구의 세척, 소독, 갱신 및 검측 상황  (4) 위생시설의 사용, 보수, 점검상황  (5) 집중 에어컨 통풍시스템의 세척, 소독 상황  (6) 종업원의 건강체크 상황과 훈련검정 상황  (7) 공동위생용품 구입증빙 관리상황  (8) 공중장소 건강 상해사고 구급 예안이나 방안  (9)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기타상황.  공중장소 위생관리 보관서류는 전담직원이 관리하고 분류하여 기록하며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9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위생훈련제도를 수립하여 종업원이 관련 위생법률 지식 및 공중장소 위생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동시에 검정해야 한다. 검정고시에서 불합격인 자는 직무에 임하지 못한다.  **제10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매년 종업원의 건강을 체크해야 하며 건강합격증명을 취득한 종업원만 직무에 임하게 해야 한다.  이질, 티푸스, A형 병독간염, E형 병독간염 등 소화도 전염병질환이 있는 종업원 및 전염성 폐결핵, 화농성이나 삼출성 피부질환이 있은 종업원은 치유 전까지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공중장소의 통풍을 잘하여 실내공기의 질이 국가 위생표준과 요구에 부합하게 보장해야 한다.  공중장소에 사용하는 에어컨, 통풍시스템은 공중장소 에어컨, 통풍시스템 관련 위생규범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2조**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생활 음료수는 국가 생활음료수표준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수영장(수영관)과 대중욕실의 수질은 국가 위생 표준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3조** 공중장소의 채광과 조명, 소음은 국가 위생표준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공중장소는 가능한 한 자연광을 채용해야 한다. 자연채광으로 부족할 경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그 장소의 규모에 맞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소음감소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품이나 기구는 위생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이나 기구는 고객이 바뀔 때마다 교체고 관련 위생표준과 요구에 따라 세척, 소독하여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 1회용 용품이나 기구의 반복사용을 금지한다.  **제15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경영규모와 업종에 따라 세척, 소독, 정결유지 등 설비와 시설 및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위생시설과 설비의 보수 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위생시설과 설비를 점검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지 제멋대로 제거하고 개조하거나 여타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중장소의 화장실에는 단독으로 통풍설비를 하여 정결을 유지하고 악취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모기, 파리, 바퀴 쥐 및 기타 질병매체생물 방지, 통제 시설과 설비, 그리고 폐기물 전용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동시에 관련 시설과 설비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폐기물은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공중장소의 지점, 설계, 인테리어는 국가 관련표준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공중장소 실내 개조, 인테리어 기간에는 영업을 금지한다. 국부 개조나 인테리어인 경우 경영자는 영업하는 구역 실내공기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실내 공중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선명한 위치에 흡연금지 경고와 표식을 해야 한다.  실외 공중장소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되 행인이 통과하는 곳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중장소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선전을 하고 전담(겸직)직원을 두어 금연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위생표준과 규범유구에 따라 공중장소의 공기, 미소기후, 수질, 채광, 조명, 소음, 고객이 사용하는 용품과 기구 등에 대한 위생검측을 해야 하며 검측은 최소 1년에 1회 진행해야 한다. 검측결과 위생표준과 규범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해야 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에게 검측여건이 없는 경우 검측을 위임할 수 있다.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검측결과를 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공시해야 한다.  **제20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공중장소의 건강 상해사고 응급예안이나 방안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공중장소 위생제도와 조치의 관철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공중의 건강 상해화근을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제21조** 공중장소의 건강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사고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현급 인민정부 위생보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건강 상해사고를 은닉하거나 보고를 지체하거나 거짓보고를 해서는 아니 되며 타인을 사촉하여 은닉하게 하거나 보고를 지체하게 하거나 거짓보고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생 감독**  **제22조** 국가에서는 공중장소에 대한 위생허가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 위생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개업하지 못한다.  공중장소 위생 감독의 구체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공포한다.  **제23조** 위생허가증을 신청하는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하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1) 위생허가증 신청서  (2) 법정 대표자나 책임자의 신분증명서  (3) 공중장소 소재지 위치표시도, 평면도, 위생시설 평면위치도  (4) 공중장소 위생검측 또는 평가 보고서  (5) 공중장소 위생관리 제도  (6)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보건 행정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집중 에어컨 통풍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밖에 에어컨 통풍시스템 검측 또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는 공중장소 위생허가증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내에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중장소 위생허가를 결정하고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허결정을 하며 서면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25조** 공중장소 위생허가증에는 반드시 일련번호, 단위명칭, 법정대표자나 책임자, 경영업종, 경영장소의 주소, 증서 발급기관, 증서 발급일시, 유효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공중장소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2년에 1회씩 심사한다.  공중장소 위생허가증은 경영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공시해야 한다.  **제26조** 공중장소를 신축, 개건,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생표준과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예방 위생심사수속을 해야 한다.  예방 위생심사절차와 구체요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제정한다.  **제27조**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단위의 명칭, 법정대표자나 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서를 발급한 원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경영업종, 경영장소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 위생허가증을 재 수속해야 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 하는 경우에는 위생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위생허가증을 발급한 원 위생보건 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제2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는 공중장소의 건강 손상요소를 측정, 분석하여 법률과 법규, 위생표준의 제정 및 그 실시의 감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질병 예방 통제기구에서는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하달한 공중장소 건강 손상요인 측정과업을 부담해야 한다.  **제2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는 공중장소 위생 감독에 대한 계량, 급별 관리를 실시하고 공중장소 자체의 위생관리를 추진하며 위생 감독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제30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는 위생 감독 계량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공중장소의 위생신용도 등급과 일상 감독회수를 확정해야 한다.  공중장소의 위생신용도 등급을 공중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공시해야 한다.  **제3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는 관련 위생표준과 요구에 근거하여 공중장소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현지 위생검측, 샘플링, 서류 사열과 카피, 질문 등 방법을 취하게 되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을 은닉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는 공중장소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3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는 건강 손상사고가 발생한 공중장소에 대하여 법에 따라 장소봉쇄, 관련물품 봉인 등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결과 장소나 물품의 오염으로 인한 경우 소독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오염되지 않은 장소와 물품, 그리고 소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제조치를 해소해야 한다.  **제34조** 공중장소에 대한 위생 검사, 검측, 평가 등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서비스기구는 그 업무에 부응하는 전문기술능력을 소유하고 관련 위생표준과 규범요구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허위 검사, 검측을 하고 허위 평가 보고서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기술 서비스기구의 전문 기술능력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보건 해정부서에서 알선하여 검정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35조** 합법적으로 공중장소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징계하는 동시에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멋대로 영업하여 위생보건 행정부서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  (2) 제멋대로 영업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황  (3) 개찬, 양도, 매입, 위조한 위생허가증을 가지고 제멋대로 영업한 상황  유효 위생허가증을 개찬, 양도, 매출한 경우 증서를 발급한 원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말소한다.  **제36조**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징계하는 동시에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고 공중장소의 위생이 위생표준과 요구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 조업중지 정비를 명하고 나아가서는 위생허가증을 말소한다.  (1)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장소의 공기, 미소기후, 수질, 채광, 조명, 소음, 고객이 사용하는 용품과 용기에 대한 위생검측을 하지 않는 상황  (2) 고객이 사용하는 용품과 기구를 규정대로 세척, 소독하지 않거나 1회용 용품을 중복 사용하는 상황.  **제37조**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해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하는 동시에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감독을 거부하는 경영자에 대하여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중지 정비를 명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위생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다.  (1)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 제도를 제정하지 않고 위생관리부문을 설립하지 않았으며 전담(겸직) 위생관리원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위생관리 서류보관 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에 대한 위생관련 법률지식 및 공중장소 위생지식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위생관련 법률지식 및 공중장소 위생지식 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종업원을 직무에 임하게 한 경우  (3)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규모와 영업종목에 부응하는 세척, 소독, 청결, 세면 등의 시설과 공동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상기 시설을 제멋대로 제거 또는 사용을 중지하였거나 여타에 이용한 경우  (4) 규정에도 불구하고 쥐, 모기, 파리 및 기타 질병매체생물 예방 통제시설 및 폐기물 전용시설과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제멋대로 쥐, 모기, 파리 및 기타 질병매체생물 예방 통제시설 및 폐기물 전용시설과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제거한 경우  (5)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생용품의 검사합격증명과 기타 관련 자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6)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축, 개건, 확장 공중장소 프로젝트의 예방 위생심사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7) 공중장소에 위생검측을 하지 않았거나 평가에 불합격인 집중 에어컨 통풍시스템을 사용에 투입한 경우  (8)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장소의 위생허가증, 위생검측결과, 위생 신용도등급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9)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장소 위생허가증 재심사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제38조**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유효한 건강 합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한 종업원을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가 시정을 명하고 징계하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1만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건강 손상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시급히 조처하지 않아 건강 손상사고가 확산되었거나 또는 사실 은닉, 보고지체, 거짓보고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업중지 정비를 명하고 나아가서는 위생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기타 위생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가하고 관련 위생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4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 및 그 임직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행위를 한 경우 관련부문에서 단위의 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42조** 이 세칙에서 하기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집중 에어컨 통풍시스템이라 함은 룸이나 패쇄 공간의 공기의 온도, 습도, 정결도 및 기류의 속도 등의 파라미터를 설정한 요구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집중 처리, 수송, 분배하는 모든 설비, 도관 및 부품, 의기, 미터의 총괄을 말한다.  공중장소의 건강 손상사고라 함은 공중장소 내에서 발생한, 전염병 또는 공기의 질, 수질이 위생표준에 달하지 못하거나 용품, 기구 또는 시설이 오염되어 야기된 공중의 건강손상사고를 말한다.  **제43조** 이 세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생보건부에서 1991년 3월 11일에 반포한《공중장소 위생관리조례 실시세칙》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公共场所卫生管理条例实施细则**  卫生部令第80号  《公共场所卫生管理条例实施细则》已于2011年2月14日经卫生部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以发布，自2011年5月1日起施行。    部长 陈 竺  二○一一年三月十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根据《公共场所卫生管理条例》的规定，制定本细则。  **第二条** 公共场所经营者在经营活动中，应当遵守有关卫生法律、行政法规和部门规章以及相关的卫生标准、规范，开展公共场所卫生知识宣传，预防传染病和保障公众健康，为顾客提供良好的卫生环境。  **第三条** 卫生部主管全国公共场所卫生监督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公共场所卫生监督管理工作。  国境口岸及出入境交通工具的卫生监督管理工作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按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铁路部门所属的卫生主管部门负责对管辖范围内的车站、等候室、铁路客车以及主要为本系统职工服务的公共场所的卫生监督管理工作。  **第四条**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根据公共场所卫生监督管理需要，建立健全公共场所卫生监督队伍和公共场所卫生监测体系，制定公共场所卫生监督计划并组织实施。  **第五条** 鼓励和支持公共场所行业组织开展行业自律教育，引导公共场所经营者依法经营，推动行业诚信建设，宣传、普及公共场所卫生知识。  **第六条** 任何单位或者个人对违反本细则的行为，有权举报。接到举报的卫生行政部门应当及时调查处理，并按照规定予以答复。  **第二章 卫生管理**  **第七条** 公共场所的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是其经营场所卫生安全的第一责任人。  公共场所经营者应当设立卫生管理部门或者配备专（兼）职卫生管理人员，具体负责本公共场所的卫生工作，建立健全卫生管理制度和卫生管理档案。  **第八条** 公共场所卫生管理档案应当主要包括下列内容：  （一）卫生管理部门、人员设置情况及卫生管理制度；  （二）空气、微小气候（湿度、温度、风速）、水质、采光、照明、噪声的检测情况；  （三）顾客用品用具的清洗、消毒、更换及检测情况；  （四）卫生设施的使用、维护、检查情况；  （五）集中空调通风系统的清洗、消毒情况；  （六）安排从业人员健康检查情况和培训考核情况；  （七）公共卫生用品进货索证管理情况；  （八）公共场所危害健康事故应急预案或者方案；  （九）省、自治区、直辖市卫生行政部门要求记录的其他情况。  公共场所卫生管理档案应当有专人管理，分类记录，至少保存两年。  **第九条** 公共场所经营者应当建立卫生培训制度，组织从业人员学习相关卫生法律知识和公共场所卫生知识，并进行考核。对考核不合格的，不得安排上岗。  **第十条** 公共场所经营者应当组织从业人员每年进行健康检查，从业人员在取得有效健康合格证明后方可上岗。  患有痢疾、伤寒、甲型病毒性肝炎、戊型病毒性肝炎等消化道传染病的人员，以及患有活动性肺结核、化脓性或者渗出性皮肤病等疾病的人员，治愈前不得从事直接为顾客服务的工作。  **第十一条** 公共场所经营者应当保持公共场所空气流通，室内空气质量应当符合国家卫生标准和要求。  公共场所采用集中空调通风系统的，应当符合公共场所集中空调通风系统相关卫生规范和规定的要求。  **第十二条** 公共场所经营者提供给顾客使用的生活饮用水应当符合国家生活饮用水卫生标准要求。游泳场（馆）和公共浴室水质应当符合国家卫生标准和要求。  **第十三条** 公共场所的采光照明、噪声应当符合国家卫生标准和要求。  公共场所应当尽量采用自然光。自然采光不足的，公共场所经营者应当配置与其经营场所规模相适应的照明设施。  公共场所经营者应当采取措施降低噪声。  **第十四条** 公共场所经营者提供给顾客使用的用品用具应当保证卫生安全，可以反复使用的用品用具应当一客一换，按照有关卫生标准和要求清洗、消毒、保洁。禁止重复使用一次性用品用具。  **第十五条** 公共场所经营者应当根据经营规模、项目设置清洗、消毒、保洁、盥洗等设施设备和公共卫生间。  公共场所经营者应当建立卫生设施设备维护制度，定期检查卫生设施设备，确保其正常运行，不得擅自拆除、改造或者挪作他用。公共场所设置的卫生间，应当有单独通风排气设施,保持清洁无异味。  **第十六条** 公共场所经营者应当配备安全、有效的预防控制蚊、蝇、蟑螂、鼠和其他病媒生物的设施设备及废弃物存放专用设施设备，并保证相关设施设备的正常使用，及时清运废弃物。  **第十七条** 公共场所的选址、设计、装修应当符合国家相关标准和规范的要求。  公共场所室内装饰装修期间不得营业。进行局部装饰装修的，经营者应当采取有效措施，保证营业的非装饰装修区域室内空气质量合格。  **第十八条** 室内公共场所禁止吸烟。公共场所经营者应当设置醒目的禁止吸烟警语和标志。  室外公共场所设置的吸烟区不得位于行人必经的通道上。  公共场所不得设置自动售烟机。  公共场所经营者应当开展吸烟危害健康的宣传，并配备专（兼）职人员对吸烟者进行劝阻。  **第十九条** 公共场所经营者应当按照卫生标准、规范的要求对公共场所的空气、微小气候、水质、采光、照明、噪声、顾客用品用具等进行卫生检测，检测每年不得少于一次；检测结果不符合卫生标准、规范要求的应当及时整改。  公共场所经营者不具备检测能力的，可以委托检测。  公共场所经营者应当在醒目位置如实公示检测结果。  **第二十条** 公共场所经营者应当制定公共场所危害健康事故应急预案或者方案，定期检查公共场所各项卫生制度、措施的落实情况，及时消除危害公众健康的隐患。  **第二十一条** 公共场所发生危害健康事故的，经营者应当立即处置，防止危害扩大，并及时向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报告。  任何单位或者个人对危害健康事故不得隐瞒、缓报、谎报或者授意他人隐瞒、缓报、谎报。  **第三章 卫生监督**  **第二十二条** 国家对公共场所实行卫生许可证管理。  公共场所经营者应当按照规定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申请卫生许可证。未取得卫生许可证的，不得营业。  公共场所卫生监督的具体范围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公布。  **第二十三条** 公共场所经营者申请卫生许可证的，应当提交下列资料：  （一）卫生许可证申请表；  （二）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身份证明；  （三）公共场所地址方位示意图、平面图和卫生设施平面布局图；  （四）公共场所卫生检测或者评价报告；  （五）公共场所卫生管理制度；  （六）省、自治区、直辖市卫生行政部门要求提供的其他材料。  使用集中空调通风系统的，还应当提供集中空调通风系统卫生检测或者评价报告。  **第二十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自受理公共场所卫生许可申请之日起20日内，对申报资料进行审查，对现场进行审核，符合规定条件的，作出准予公共场所卫生许可的决定；对不符合规定条件的，作出不予行政许可的决定并书面说明理由。  **第二十五条** 公共场所卫生许可证应当载明编号、单位名称、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经营项目、经营场所地址、发证机关、发证时间、有效期限。  公共场所卫生许可证有效期限为四年，每两年复核一次。  公共场所卫生许可证应当在经营场所醒目位置公示。  **第二十六条** 公共场所进行新建、改建、扩建的，应当符合有关卫生标准和要求，经营者应当按照有关规定办理预防性卫生审查手续。  预防性卫生审查程序和具体要求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制定。  **第二十七条** 公共场所经营者变更单位名称、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的，应当向原发证卫生行政部门办理变更手续。  公共场所经营者变更经营项目、经营场所地址的，应当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重新申请卫生许可证。  公共场所经营者需要延续卫生许可证的，应当在卫生许可证有效期届满30日前，向原发证卫生行政部门提出申请。  **第二十八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组织对公共场所的健康危害因素进行监测、分析，为制定法律法规、卫生标准和实施监督管理提供科学依据。  县级以上疾病预防控制机构应当承担卫生行政部门下达的公共场所健康危害因素监测任务。  **第二十九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对公共场所卫生监督实施量化分级管理，促进公共场所自身卫生管理，增强卫生监督信息透明度。  **第三十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根据卫生监督量化评价的结果确定公共场所的卫生信誉度等级和日常监督频次。  公共场所卫生信誉度等级应当在公共场所醒目位置公示。  **第三十一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对公共场所进行监督检查，应当依据有关卫生标准和要求，采取现场卫生监测、采样、查阅和复制文件、询问等方法，有关单位和个人不得拒绝或者隐瞒。  **第三十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加强公共场所卫生监督抽检，并将抽检结果向社会公布。  **第三十三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对发生危害健康事故的公共场所，可以依法采取封闭场所、封存相关物品等临时控制措施。  经检验，属于被污染的场所、物品，应当进行消毒或者销毁；对未被污染的场所、物品或者经消毒后可以使用的物品，应当解除控制措施。  **第三十四条** 开展公共场所卫生检验、检测、评价等业务的技术服务机构，应当具有相应专业技术能力，按照有关卫生标准、规范的要求开展工作，不得出具虚假检验、检测、评价等报告。  技术服务机构的专业技术能力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组织考核。  **第四章 法律责任**  **第三十五条** 对未依法取得公共场所卫生许可证擅自营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并处以五百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有下列情形之一的，处以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一）擅自营业曾受过卫生行政部门处罚的；  （二）擅自营业时间在三个月以上的；  （三）以涂改、转让、倒卖、伪造的卫生许可证擅自营业的。  对涂改、转让、倒卖有效卫生许可证的，由原发证的卫生行政部门予以注销。  **第三十六条** 公共场所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并可处以二千元以下罚款；逾期不改正，造成公共场所卫生质量不符合卫生标准和要求的，处以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可以依法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卫生许可证：  （一）未按照规定对公共场所的空气、微小气候、水质、采光、照明、噪声、顾客用品用具等进行卫生检测的；  （二）未按照规定对顾客用品用具进行清洗、消毒、保洁，或者重复使用一次性用品用具的。  **第三十七条** 公共场所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的，给予警告，并处以一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对拒绝监督的，处以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可以依法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卫生许可证：  （一）未按照规定建立卫生管理制度、设立卫生管理部门或者配备专（兼）职卫生管理人员，或者未建立卫生管理档案的；  （二）未按照规定组织从业人员进行相关卫生法律知识和公共场所卫生知识培训，或者安排未经相关卫生法律知识和公共场所卫生知识培训考核的从业人员上岗的；  （三）未按照规定设置与其经营规模、项目相适应的清洗、消毒、保洁、盥洗等设施设备和公共卫生间，或者擅自停止使用、拆除上述设施设备，或者挪作他用的；  （四）未按照规定配备预防控制鼠、蚊、蝇、蟑螂和其他病媒生物的设施设备以及废弃物存放专用设施设备，或者擅自停止使用、拆除预防控制鼠、蚊、蝇、蟑螂和其他病媒生物的设施设备以及废弃物存放专用设施设备的；  （五）未按照规定索取公共卫生用品检验合格证明和其他相关资料的；  （六）未按照规定对公共场所新建、改建、扩建项目办理预防性卫生审查手续的；  （七）公共场所集中空调通风系统未经卫生检测或者评价不合格而投入使用的；  （八）未按照规定公示公共场所卫生许可证、卫生检测结果和卫生信誉度等级的；  （九）未按照规定办理公共场所卫生许可证复核手续的。  **第三十八条** 公共场所经营者安排未获得有效健康合格证明的从业人员从事直接为顾客服务工作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并处以五百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逾期不改正的，处以五千元以上一万五千元以下罚款。  **第三十九条** 公共场所经营者对发生的危害健康事故未立即采取处置措施，导致危害扩大，或者隐瞒、缓报、谎报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处以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可以依法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卫生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条** 公共场所经营者违反其他卫生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给予行政处罚的，按照有关卫生法律、行政法规规定进行处罚。  **第四十一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及其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收取贿赂的，由有关部门对单位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章 附 则**  **第四十二条** 本细则下列用语的含义：  集中空调通风系统，指为使房间或者封闭空间空气温度、湿度、洁净度和气流速度等参数达到设定的要求，而对空气进行集中处理、输送、分配的所有设备、管道及附件、仪器仪表的总和。  公共场所危害健康事故，指公共场所内发生的传染病疫情或者因空气质量、水质不符合卫生标准、用品用具或者设施受到污染导致的危害公众健康事故。  **第四十三条** 本细则自2011年5月1日起实施。卫生部1991年3月11日发布的《公共场所卫生管理条例实施细则》同时废止。 |